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지 면) 2. 21.(화) 조간 (인터넷) 2. 20.(월) 12:00	-

담당 부서	지역기업정책관 입지환경개선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령 (044-204-7580)
		담당자	사무관	유기석 (044-204-7472)

중소벤처기업부, 4차산업 신기술 기업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문호 활짝!

□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 여건이 좋은 벤처기업집적시설(도심건물) 입주 대상을 인공지능·로봇·우주항공 등 4차산업 신기술 영위 기업까지 확대

□ 규제 완화에 따른 입지 선택권 확대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 완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을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2월 20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 허용 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AI)·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교통·정보통신·금융 등의 기반(인프라)이 잘 갖춰져 젊은 층과 기업들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에 벤처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건축물로서 벤처기업 집적화가 가능해져 입주기업은 정보교류와 기업 간 협업 등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

* 최초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비수도권은 3개 이상)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미술장식 의무배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의 34.1%가 4차산업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미래먹거리로서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벤처기업집적시설에는 벤처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기업, 창업보육센터 3년 이상 입주 경력 기업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유사시설과 비교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입주대상에 4차 산업분야 신기술 기업들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하였다.

<입주대상 기업 확대>

기존 입주대상	개정 후
① 벤처기업 ② 지식(기반)산업 또는 정보통신 기업 ③창업보육센터 3년이상 입주 경력 중소기업	기존 입주대상(①, ②, ③) + ④ **인공지능·자율주행·차세대 원전·로봇·우주항공 등 신기술* 개발·보급 기업**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 사업(프로젝트)**('22.11,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22.10, 과기부), **신기술 4.0전략 추진계획**('22.12, 기재부) 상의 **신기술 반영**

이번 규제 완화로 신기술 기업의 입지 선택권이 확대되어 입지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설시행자에게는 사업성 강화와 시행 위험(리스크) 완화 효과를 가져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벤처기업집적시설 수 : 111개('23.1월 기준)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 제조현장 디지털화, 지역 주력산업 개편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에 걸림이 되는 규제 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 확대로 4차산업 분야 신기술 기업의 입지난이 완화되고, 기업 간 협업과 활발한 인적교류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비수도권 집적시설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여 지방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

□ **(개요)** 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 입주** 및 **영업활동 지원**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승인**

□ **지정요건**

① 전용면적이 **600㎡이상**인 건축물

② **(先 지정 → 後 요건충족)** 지정*받은 건축물은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 신축 예정 또는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도 지정 신청 및 지정 승인 가능

** 요건충족 기간(1년)은 벤처기업 등이 실입주 가능한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기산

- 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비수도권은 3개 이상)
- **건축물 연면적**(전용면적)의 **70%**(비수도권 50%) 이상 **벤처기업, 지식기반** 또는 **정보통신, 신기술 기업**이 입주

□ **지정 현황**

○ 전국 111개(수도권 63개, 57%) 2,768개사 입주(벤처 814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13	7	3	6	9	1	1	47	3	3	2	2	-	12	1	1	-	111

□ 지정시 혜택

○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23년말), **6개 부담금** 면제, 국공유재산 등에 대한 **수의계약/신탁** 등 허용, 국토계획법 등 **규제법령 적용제외**, 미술장식 **설치 의무 배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및 재산세(5배)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역별 주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역	벤처집적시설 외관	현황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서울 마포구)**	
		-준공 : 2012.06.22 -지정 : 2012.05.31 -면적 : (지정) 43,326㎡	-지자체 : 서울시 -사업자 : 중소기업DMC타워 -소유주 : 중소기업중앙회 -입주기업 : 74개사 -입주벤처 : 19개사
경기		**판교이노밸리(6BL) (경기 성남시 분당구)**	
		-준공 : 2011.03.29 -지정 : 2008.12.16 -면적 : (지정) 62,489㎡	-지자체 : 경기도 성남시 -사업자 : ㈜이노밸리 -소유주 : ㈜파인알시스템 외 37개사 -입주기업 : 74개사 -입주벤처 : 19개사
대전		**충남대학교 산학연교육연구관 (대전 유성구)**	
		-준공 : 1997.07.01 -지정 : 2000.04.27 -면적 : (지정) 2,631㎡	-지자체 : 대전시 -사업자 : 충남대학교 -소유주 : 충남대학교 -입주기업 : 37개사 -입주벤처 : 20개사
대구		**SW융합테크비즈센터 (대구 수성구)**	
		-준공 : 2019.03.21 -지정 : 2020.01.03 -면적 : (지정) 13,095㎡	-지자체 : 대구시 -사업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소유주 : ㈜포스코 -입주기업 : 35개사 -입주벤처 : 9개사
포항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 (경북 포항시 남구)**	
		-준공 : 2021.06.28 -지정 : 2021.09.09. -면적 : (지정) 28,372㎡	-지자체 : 포항시 -사업자 : ㈜포스코 -소유주 : ㈜포스코 -입주기업 : 88개사 -입주벤처 : 40개사

참고 2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내용

□ 신 · 구조문 대비표 : 제6조, 제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추가지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제6호의 "신기술의 개발·보급현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신기술이나 제품·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인공지능·빅데이터(예: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2. 미래 모빌리티(예: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시스템, UAM) 3. 바이오·헬스(예: 의약, 임상기술, 의료기기, 감염병 백신·치료) 4. 차세대 원전(예: 소형모듈원자로(SMR), 선진원자력시스템·폐기물관리) 5. 차세대 물류(예: 로봇·드론 배송) 6. 차세대 통신(예: 5G고도화, 6G, 오픈랜) 7. 로봇(예: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8. 친환경 에너지(예: 자원순환, CCUS,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9. 우주항공·해양(예: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해양자원탐사) 10. 양자 기술(예: 양자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11. 사이버 보안·네트워크(예: 복호화,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사물인터넷) (다만, 블록체인의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통해 영업이 가능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다.) 12. 시스템 반도체(예: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컴포넌트) 13. 차세대 디스플레이(예: 프리폼 디스플레이,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 신 설 >	**제6조의2(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신기술)** 제6조 1호에서 13호까지의 기술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신기술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